	명예퇴직규정	제 정 일	2001. 3. 1
		개 정 일	2023.10. 1
		개정차수	6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학산학원 정관 제6장 제49조, 제74조에 의거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정규 교직원의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예퇴직 신청자격) ① 본교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 중에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단, 조교 및 계약직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4. 3. 1)

② 근속기간 및 정년 잔여기간은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재직 중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3조 (명예퇴직의 제한) ① 매학기 명예퇴직 신청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교직원에게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3.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총장은 교직원 수급계획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허가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제 4조 (명예퇴직 수당) ① 명예퇴직자에게는 예산상 허용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0. 1.)

③ 잔여 월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그 미만은 버린다.

제 5조 (공지) 매학기 명예퇴직 신청에 관한 사항을 늦어도 명예퇴직 신청기간 개시일 10일 전까지 전 교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6조 (명예퇴직 신청) ①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명예퇴직 예정일 4개월 전까지 명예 퇴직원(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명예퇴직예정일은 매 학년도 2월말 또는 8월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4. 1)

제 7조 (명예퇴직 심사위원회) ① 명예퇴직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와 직원인사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조 (심사 및 결정) ① 위원회는 명예퇴직원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한다.

1. 공상 또는 상병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교직원
2. 잔여근무기간이 짧은 교직원
3. 상위직급 교직원
4. 장기근속 교직원

② 명예퇴직신청자가 명예퇴직 결정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명예퇴직 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 공무상 질병으로 명예퇴직 신청 중 사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이 허가되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 9조 (결정통지) 명예퇴직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명예퇴직결정통지서(별표 제2호 서식)를 소속 부서장과 본인에게 통지하며, 해당 교직원은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한다.

제10조 (명예퇴직수당 신청) 제9조에 의하여 명예퇴직허가 결정 통지를 받은 교직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표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행정지원과에 제출한다.

제11조 (수당지급시기)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12조 (수당의 수령권자) 수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본인 사망 시에는 민법에 정해진 유족 우선순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3조 (명예퇴직자 예우) 명예퇴직한 자의 자녀에 대하여 정년 잔여기간 동안 본교 재학생이 있는 경우 자녀학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분장) 명예퇴직심사에 관한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관장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신설 2019.10. 1, 개정 2023.10.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 잔여기간	산정기준
1년 이상 5년 이내	퇴직당시 월 통상임금액의 42%×정년 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	퇴직당시 월 통상임금액의 42%×[60+(정년 잔여월수-60)/2]
10년 초과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1. 호봉제 교직원의 월 통상임금은 본봉, 상여Ⅰ·Ⅱ, 정근수당, 직책수당, 관리수당, 연구보조비, 업무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자격수당, 겸직수당, 명절상여의 연 지급 합산액의 1/12로 한다.
2. 연봉제 교직원의 월 통상임금은 연봉계약서상의 연봉액, 직책수당, 직급보조비의 연 지급 합산액의 1/12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9. 2.13)

명 예 퇴 직 원

부 서 장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사유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인 (인)

동서울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9. 2.13)

명예퇴직결정 통지서

수　　신 :

귀 부서의 소속 교직원이 다음과 같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합니다.

- 다　　음 -

1. 명예퇴직대상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2. 수당 결정액 :

3. 지급예정일 :

4. 지　급　처 :

5. 첨부 : 사직원 양식 1부.　　끝.

년　　월　　일

동 서 울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09. 2.13, 2019.10. 1)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기재상 주의 : 별표(※)는 인사 또는 급여담당자가 기재한다.

소 속			교직원 구분	□ 교 원 ( ) □ 직 원 ( )	직 급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주 소	□□□-□□□		
전화번호			근 속 년 수	년 월	정년일	년 월 일
정년연령		만 세	※수당청구액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교직원 인사규정 및 명예퇴직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 확 인	인사담당	인	급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붙 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 확인) 1부.
2. 급여대장 사본(원본대조 확인) 1부.

. . .

(소속부서의 장) (인)

동서울대학교총장 귀하